

공고

기안용지

제 2142 (전화번호 202) 권결규정 조 권결사항

처리기한	기안자	결재자
시행일자	김두기	재무국장 조
보존년한	기안일자 68.12.4	결일자

보조기관	관재과장 김두기	확법인무 12월1일
	취분계장 공고제 213호	

협조	예산과장	예산과장	회계조사과장	회계조사과장
경유	시민과장 김두기	법무과장 김두기	보통계장 김두기	
유신	내부결재	통계과장 김두기	정서	과대장정리

제목 시유재산 매각 인감공고

1. 매각 책정된 다음은 시유재산을 별과 같이 시유에 공고하여 매각 처분과 합니다

가. 재산의 표시
별첨 재산 목록과 같은

나. 공고신분
공보신에서 자

다. 매각 방법
일반 경쟁 입찰

라. 공고료
100원

주 예산과장 **김두기**

(3.25.80 ~ 8.18.80 X 2 = 54,000원)

바 지출 목록 (과) 재부비 (하) 재산비 (세항)
재산관리비 (목) 수수료

바 지출방법. 청구에 의하여 구분함
첨부 1. 공과금 일부
2. 재산 목록 일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3호

서울유재산 판매 입찰 공고

다음포시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일반 판매 합니다.



1.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2. 입찰일시 1968. 12. 23. 10시
3. 입찰등록 1968. 12. 21. 12시 까지 시세
세 납세필증을 구비하여 당시 재무국 관재과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이나
시중은행 보증수표로서 동봉하여야 합니다.
5. 매매계약 및 대금납부방법
낙찰자는 낙찰액의 100분의 1 이상 자립저축을
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후 20일 내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기일내 대금을 납부하면 3할공제의 혜택을 받게되며 만약 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금을 납부하지 않
을 때는 보증금을 당시 세입으로 커속조치 합
니다.

5-4

6. 재산 매각 후 정수에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당시
가 정하는 가격으로 추납 또는 반환 ^{한편 지상시선문} ~~한다~~.
7. 재산 목록과 제약조항은 당시 제목록 관제하에

고시하고 있으니 상세한 것은 이곳에 문의 하
기 바랍니다.

8. 재산의 표시

변천 재산목록과 같은,

위 공고합니다

1968. 12. 11

서울특별시

재 산 목록

연번	구	동	지번	면적	평수	비고
1	동대문	창신	422-2	상중	3640	지상 건물 있음
2	"	"	422-17	"	1410	"
3	"	"	422-3	천	1120	"
4	"	"	423-3	"	1030	"
5	"	"	423-12	"	510	"
6	"	"	424-10	상중	060	"
7	"	"	460-9	천	43	"
8	"	"	403-2	"	23	"
9	"	"	409	"	17	"
10	용산	환산	183-77	바	2,252	인부 지상 건물 있음
11	성북	상계동	산39	인야	1680	
12	영등포	방화	산153-1	"	15,030	
	"	개화	산91-6	"	12,930	
13	성동	성수동가	72-97	천	116	
14	서초	홍제	437-11	인야	3,936평	인부 지상 건물 있음
15	관악 신원동	동산리 2	6-9	인야	약 500평	지상 건물 및 사주 건물 있음
			22-9	인야	1,120평	